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2월 29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나	이 *리아 1994-07-07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(창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2-29
이 *나	이 *나 1987-08-05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(창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2-29